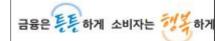


# 보도자료



보도	2025.5.22.(목) 조간	배포	2025.5.21.(수)		
담당부서	가상자산조사국	책임자	팀 장	김진영	(02-3145-7192)
	가상자산조사팀	담당자	수 석	김진구	(02-3145-7193)

#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

- ★ 최근 가상자산거래소(이하 '거래소')의 불공정거래 관련 이용자 예방조치\* 내역 및 금융당국의 조치사례 분석 결과, 일부 이용자\*\*들이 「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「가상자산법」) 시행('24.7.19.)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거래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  - \*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이상거래에 대해 사전에 이용자에 대해 부과하는 조치로 「가상자산법」에서는 이용자 주문의 수량·횟수 등 제한, 거래중지 등을 도입
  - \*\* 20~30대 참여 비중이 높은 가상자산시장 특성상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 및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자에도 젊은 연령대의 이용자가 상당수 포함
- ◆ 이에 가장·통정매매,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등을 안내드리오니,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는 주문을 제출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◈ 한편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감시하여 반복될 경우, 심리를 통해 감독당국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통보하고 있으니
  - **거래소**로부터 **예방조치 안내**를 받는 경우,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**조치사유**를 **반드시 확인**하여 **이상거래**가 **반복**되지 **않도록** 당부드립니다.

# 1 배 경

- □ (이용자 비중 등) 가상자산이 20~30대들에게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 받으면서 동 연령층의 이용자 비중이 약 절반\*을 차지하고 있으며
  - \* '24년말 기준 가상자산 시장의 30대 이하 이용자 비중은 47.6%로 주식시장('24년말 기준 30대 이하 투자자 비중 34.1%)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(출처: '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<FIU·금융감독원, '25.5.>, '24.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<예탁결제원, '25.3.>)
  - 원화거래소의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<sup>\*</sup> 및 금융감독원의 불공정 거래 조사대상자 중에도 20~30대 이용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.
    - \*「가상자산법」 도입('24.7.19.) 이후 '24.12월말까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예방조치 중 52.5%가 20~30대에게 부과

-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「가상자산법」이 시행되었음에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관행대로 거래\*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
  - \* 금융감독원 문답 과정에서 조사대상자들은 한결같이「가상자산법」시행 이전부터 투자를 해왔으며, 자신들의 매매가 위법인지 몰랐거나 실수에 의한 거래였다고 주장 中
- ⇒ 이에 20~30대를 비롯한 **이용자**들에게 처벌 가능성이 높은 **주요** 불공정거래 유형과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.

#### 2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 및 유의사항

- □ (불공정거래 유형) 「가상자산법」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의 거래는 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로 금융감독원 조사, 사법당국의 수사 등을 거쳐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
  - (API\* 이용 고가매수) 특정 시점\*\*에서 단기간(수 초~수 분) 동안 API를 통해 고가매수 주문을 집중 제출하여 가상자산의 가격 및 거래량을 급등시키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신속하게 보유물량을 처분하는 행위
    - \* API(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)는 거래소 및 이용자의 매매주문시스템이 서로 통신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정의된 규칙이나 절차를 의미
    - \*\* 거래소의 시세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각 전후,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 기간 등
  - **(가장매매)** 가상자산을 **선매집**한 이후 자신의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반복적으로 **상호체결**시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**위장**하는 행위
  - (통정매매) 타인과 가격·수량·시기 등을 사전에 약속하고 매수· 매도주문을 상호체결시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
  - (미궁개정보 이용) 내부자로부터 국내외 주요 거래소에 특정 가상 자산이 거래지원(상장) 된다는 중요정보\*를 사전에 지득한 후,
    - \* 거래지원 관련 정보 이외에도 에어드롭, 가상자산 발행재단과 유수 기업과의 협업 등 가상자산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도 중요정보에 해당
    - 동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지원 중인 다른 거래소에서 해당 가상자산을 매수하고, 정보공개로 가격이 상승하면 매도하는 행위(또는 내부자가 타인에게 이러한 미공개정보를 전달하여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)

- (선매수 후 SNS 등 추천)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뒤 SNS 등을 통해 타인에게 매수를 권유(종목, 시간, 가격 등을 리딩)한 다음, 매수세가 유입되어 가격이 상승하면 선매수한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행위 등
- □ (이용자 유익사항) 위와 같은 행위들은 금융감독원 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기관에 통보되는 경우 형사처벌\* 및 과징금\*\*이 부과될 수 있으니,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\*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 금액 3~5배 상당의 벌금(가상자산법 §19①)
  - \*\* 부당이득 금액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(가상자산법 §17①)
  - 또한, 다수가 **사전에 공모**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이를 주도 하지 않았더라도 **공범에 해당**될 수 있으니 **유의**해 주시기 바라며
  - 단순히 법령을 알지 못한 채 관행대로 거래하였더라도 이는 법규 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**3** │ 거래소의 이상거래 예방조치 및 유의사항

- □ (이상거래 예방조치) 거래소는 가격·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등의 이상거래를 감시하고, 이용자 보호를 위해 주문제한(수량, 횟수 등) 등의 사전 예방조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
  - 예방조치는 "경고→주문제한 예고→주문제한" 단계로 운영되며,
    이상거래의 지속·반복성, 다른 이용자 피해 등을 종합 검토하여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\*됩니다.
    - \* 다만, 예방조치 없이 금융당국에 불공정거래로 통보되는 경우도 있음
- □ (이용자 유의사항) 거래소로부터 유선, 문자메시지, SNS 등을 통해 예방조치(경고, 주문제한 등) 관련 안내를 받는 경우 반드시 조치 사유를 확인하여 이상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,
  - 예방조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상매매를 반복할 경우 거래소 심리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되어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.

- ☞ (참고) API를 이용한 자동매매 관련 유의사항
  - API를 통한 자동 매수·매도가 일반화된 가상자산시장에서는 가상자산 가격 급등락이 빈번한 바, 이 과정에서 본인의 매수·매도 주문이 반복적으로 상호체결되는 경우 가장매매로 적출되어 거래소의 예방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  - **다수 계정을 운영**하면서 API를 통해 **동시에 매수·매도 주문이 제출**되도록 설계 하고, **동 계정간** 매수·매도 주문이 **반복적**으로 **상호체결**되는 경우 **통정매매**로 적출되어 예방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  - ※ 다만, 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은 불공정거래 여부 판단에 앞서 **내부기준**에 따라 이루어지며,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**금융당**국에 **통보**됩니다.

## 4 향후 계획

- □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이용자에 대한 예방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한편,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시 주기적으로 관련내용을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안내하는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- □ 아울러,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체계 및 금융당국의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시장감시 능력 제고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할 계획이며,
  - 적발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조치하는
    등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질서 확립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.

## 불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주요 조치사례

- □ (허수매수를 이용한 매수 유인) 甲은 다른 곳으로부터 전송받은 대량의 가상자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본인 및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고가 매수주문을 통해 해당 가상자산의 가격을 상승시킨 다음
  - 체결의사 없는 허수 매수주문을 지속·반복 제출하여 매수세가 유입된 것처럼 **오인**케 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
- □ **(가장매매를 활용한 시세상승 유도)** 乙은 평소 거래량이 적고, 시총이 작은 소형종목이 거래소의 입출금 중단으로 차익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해당 가상자산을 매집한 다음
  - **가장매매**를 집중하여 **시세**를 10배 이상 급등시키고, 그 이후에도 **가장** 매매를 지속하여 가격하락을 방지하면서 거래량을 늘려 매수세가 있는 것처럼 **위장**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유인
- □ (선매수 후 가격상승 유도) 丙은 주문매체 A로는 가상자산을 선매수하고, 사전에 시세조종 목적으로 준비한 주문매체 B로는 시장가 매수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초단기에 집중·반복 제출하여
  - 해당 가상자산의 **가격이 상승하면** 주문매체 A, B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실현
- □ (API를 이용한 고가매수) 丁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격 변동률이 갱신되는 시각( $\triangle \triangle A$ ) 전후에 지정가 매수주문을 통해 가상자산을 매수한 다음
  - API를 이용한 시장가 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하였으며, API 자동 주문 외에도 최고가를 경신하기 위한 수동 고가매수 주문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